

인천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단2120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방인석, 유병일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오 담당변호사 강진영, 박경진, 강경식

변론 종결 2024. 3. 6.

판결 선고 2024. 7. 3.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7. 6.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20. 7. 6. 접수 제26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3.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아래 순번을 붙인다)을 체결하였다.

1	2016. 10. 31.	2016. 10. 31. ~2017. 10. 30.	297,000,000	C	3회 걸쳐 보증기간 연장 (최종 2020. 10. 29.까지)
2	2017. 4. 27.	2017. 4. 27. ~2018. 4. 26.	702,000,000	D	3회 걸쳐 보증기간 연장 (최종 2021. 4. 23.까지)

○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E은행으로부터 2016. 11. 2.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30,000,000원을, 2017. 5. 11. B2B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78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 E은행은 2020. 7. 17. 원고에게 B의 사업장 폐업 및 대출원리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 후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1. 2. 1. E은행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302,053,512원(=원금 297,000,000원+이자 5,053,512원)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703,852,620원(=원금 696,604,898원+이자 7,247,722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채권을 취득하였다(한편, 보증료 환급금 등 2,790,680원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원금 일부에 충당되었다).

다. B의 재산 처분행위

B은 2020. 7. 6. 자기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20. 7. 6. 접수 제26732호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4, 제14호증(가지번호를 붙이지 않은 경우 그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이후 약 보름 만에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의 채무 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2021. 7. 1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가액의 합계는 171,271,255원이다.

한편, 갑 제1호증의 6, 제2호증의 6,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B의 소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가액의 합계는 50억 2,800만 원인바, 결국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B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 재산	① 순천시 G아파트 H호	225,000,000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 시가감정 축탁결과에 따른 가액 합계 252,000,000원-각 부동산의 소액임대차보증금 합계 27,000,000원
② 같은 아파트 I호			
③ 같은 아파트 J호			
2	이 사건 부동산	94,271,255	갑 제7호증의 4, 제15호증
3	주식회사 K에 대한 가압류채권	50,000,000	을나 제1호증
4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1)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적극재산 중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450만 원, 근저당권자 N은행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순번 2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 근저당권자 N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의 L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무렵인 2020. 7. B의 N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의 합계가 1억 9,800만 원인바, 이를 위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로 보아 위 채무액을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198,000,000	이 법원의 L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명령 회신결과
합 계	171,271,255		

1	E은행	1,208,000,000	갑 제16호증
2	M은행	300,000,000	
3	기업은행	200,000,000	
4	N은행	195,000,000	

1	E은행	1,208,000,000	갑 제16호증
5	○은행	250,000,000	
소극 재산	6	P	2,231,000,000
7	Q	24,000,000	
8	R 주식회사	24,000,000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6,000,000	
10	신용보증기금	500,000,000	
합 계	5,028,000,000		

다.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 상태가 심화된 점, ② B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에서 B의 채무 초과 여부나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에 관하여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원인이 된 채무의 발생 사실이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도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선의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제공된 책임재산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악의는 여전히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임대차계약상 지위도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일반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에 영향을 미쳐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달라진다고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훈

별지

원, 근저당권자 N은행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순번 2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 근저당권자 N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의 L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무렵인 2020. 7. B의 N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의 합계가 1억 9,800만 원인바, 이를 위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로 보아 위 채무액을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다.